

『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공기업 특별회계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,
- 장기 투자사업 소요재원 확보로 하수도 시설을 확충하여 낙동강 수질 보전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하수도 업종별 요금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도별 15% 총 75% 인상(안 별표 1)
 - 2016년 11월 고지분부터 조정(원/ m³ 당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하수도법」, 「지방공기업법」,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
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 하수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2016. 4. 6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침
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

- 하수도 업종별 요금을 연도별 단계별로 인상하여 원가대비 낮게 책정된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,
- 독립채산제인 공기업 특별회계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,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낙동강 수질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